#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 • 의결

**안건번호** 제2023-013-161호

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

피 심 인 학교법인 일송학원(법인등록번호: - )

대표자

의결연월일 2023. 7. 26.

# 주 문

1.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.

가. 과 태 료 : 16,800,000원

나. 납부기한 :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

다. 납부장소 :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

- 2. 피심인 산하 종합병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.
  - 가.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포함하여 피심인이 운영 중인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전반에 대해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29조(안전 조치 의무)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,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
  - 나. 대표자를 비롯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것

다. 상기 개선 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제출할 것

3. 피심인 산하 종합병원의 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의 내용 및 결과 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.

### 이 유

#### I. 피심인의 일반 현황

피심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( )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(법률 제16930호, 이하 "보호법"이라 함)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인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.

#### < 일반현황 >

<b>학교법인명</b> (법인등록번호)	<b>병원명<sup>*</sup></b> (사업자등록번호)	설립일자	병원 대표자	상시 종업원수	<b>자본금</b> (억원)	<b>매출액</b> ('21년, 억원)

### Ⅱ. 사실조사 결과
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유출 신고('22.1.4.)가 접수된 건과 관련하여 현장조사 및 이와 관련된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,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.

### 1. 개인정보 유출 개요

### 가. 유출 규모 및 경위

- (유출 규모) 피심인 산하 4개 병원에서 총 19,044명의 환자정보\*가 유출되었고, 이중 진료과와 처방코드는 민감정보에 해당한다.
  - \* 성명, 환자등록번호, 생년월일, 나이, 성별, 처방일, 처방의, **진료과**, 처방내역(수량, 용량, 횟수, 일수, **처방코드**)

#### < 병원별 유출 규모 >

개인정보처리시스템	병원명	유출시기	유출규모
	한림대학교 성심병원	'19. 4월~'20. 1월	8,631명
	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	'19. 7월	3,095명
	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	'18.11월~ '19. 3월	5,831명
	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	'18.11월~'19. 3월	1,487명

○ (유출 경위) 제약회사 직원이 <sup>●</sup>병원 직원이 로그인 한 시스템에서 해당 직원의 묵인하에 환자정보를 본인의 보조저장장치(USB)에 내려 받거나, <sup>②</sup>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병원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내려받은 환자정보를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하였다.

#### < 병원별 유출 경위 >

병원명	유출 경위
한림대학교 성심병원	
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	
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	
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	

## 나. 유출 경과 및 대응

일 시	유출 인지·대응 내용
'21. 2월 ~ 5월	o 경찰청으로부터 수사 사항 비공개 공문을 접수 후 인지 및 미신고 o 경찰청의 1차 참고인(정보보호·시스템 담당 등) 조사
'21.10월 ~ 11월	ㅇ 경찰청의 2차 참고인(병원장) 조사
'21.12.23 ~ 12.31	ㅇ 경찰청 수사 결과 통보
'22. 1. 4.	ㅇ 유출 신고
'22. 2. 9. ~ 2.18.	○ 유출 파일 확인 및 수령(경찰청 → 개인정보위 → 병원)
'22. 2.23. ~ 2.25.	o 유출 통지(한강성심병원(2.23.), 성심·강남성심병원(2.24.), 동탄성심병원(2.25.))

#### 2. 행위사실

### ○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

- 피심인 산하 4개 병원은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으로 인해 개인 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때의 접근 권한 부여·변경·말소에 대한 내역을 3년 이상 보관하지 않은 사실(2년 보관)이 있고,
- '개인정보 다운로드 사유' 등 접속기록 일부를 누락한 사실과 함께, USB 등 보조저장매체 반출·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.

### 3. 위법성 판단

○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때 접근 권한 부여, 변경 또는 말소 내역에 관한 기록을 3년 이상 보관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3조제2항과 제2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기준」(이하 '고시') 제5조제3항 위반에 해당하고,

-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 일부(개인정보다운로드 사유 등)를 누락한 행위는 보호법 제23조제2항과 제2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고시 제8조제2항 위반에 해당하며, USB 등 보조저장매체 반출·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지 않은행위는 보호법 제23조제2항과 제2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고시 제11조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.

### Ⅲ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
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'23. 5. 23.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, 피심인 산하 종합병원은 '23. 6. 5.~6. 7. 기간 의견제출을 통해 보호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시정을 완료하면서 선처를 요청하였다.

### Ⅳ. 처분 및 결정

### 1. 과태료 부과

피심인 산하 4개 병원의 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9조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,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[별표2]의「과태료의 부과기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병원별로 산정된 과태료 금액(360만 원)을 합산하여 총 1,6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# 가. 기준금액 산정

피심인 산하 4개 병원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 총 600만 원을 적용한다.

#### < 과태료 부과기준 2. 개별기준>

위반행위	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(단위 : 만 원)		
		1회 위반		2회 위반	3회 이상
자.	법 제23조제2항 또는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		600	1,200	2,400

#### 나. 과태료의 가중

「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」(2023. 3. 8.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의결, 이하 '과태료 부과지침') [별표2] <u>과태료의 가중기준(제8</u>조 관련)에 따라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3개인 점,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준금액(600만원)의 20%를 가중한다.

#### < 과태료의 가중기준(제8조 관련) >

기준	가중사유	비율
위반의 정도	1. 제3호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3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	기준금액의 50% 이내
위반기간	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	기준금액의 50% 이내

#### < 과태료의 가중기준(제8조 관련) - 제3호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 >

위반행위	세부기준
	보호법 제23조제2항, 제24조제3항, 제25조제6항, 제28조의4제1항 또는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로서,
	<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>
보호법 시행령 제63조 별 <del>표</del> 2	나. <u>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</u> 에 따른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
제2호 자목	라. <u>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</u> 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·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
	바. <u>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6호</u> 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
	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

# 다. 과태료의 감경

과태료 부과지침 [별표1] <u>과태료의 감경기준(</u>제7조 관련)에 따라 각 병원이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점,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(ISMS)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(600만원)의 50%를 감경한다.

#### < 과태료의 감경기준(제7조 관련) >

기준	감경사유	감경비율
조사협조 · 자진시정 등	1.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	기준금액의 50%이내
개 인정보보호 노력정도	2. 위반행위자가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자로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(ISMS)을 받은 경우 ⇒ 4개 병원 중 동탄·강남·한강성심병원 등 3개 병원에 해당	기준금액의 40%이내

<sup>※</sup>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(과태료의 감경)에 따라 과태료의 감경은 기준금액의 50%를 초과할 수 없음

#### 라. 최종 과태료

피심인 산하 각 병원의 보호법 제23조2항 및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·감경을 적용하여 총 420만 원을 각각 부과한다.

#### < 최종 과태료 산출내역 >

과태료 처분의 근거			과태료 금액 (단위:만 원)			
위반 조항 처분 조항		기준 금액(A)	가 <del>중</del> 액 (B)	감경액 (C)	최종액 (D=A+B-C)	
제23조(민감정보의 처리 제한)② 제29조(안전조치의무)	제75조제2항제6호	600	120	300	420	

<sup>☞</sup>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, 100분의 20을 감경함(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)

### 2. 개선권고

의료데이터로서 사생활 침해 위험이 큰 민감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었고, 개인정보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확인된 점,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유출사고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선을 권고한다.

- ①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포함하여 피심인이 운영 중인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전반에 대해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29조(안전조치 의무)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,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
- ② 대표자를 비롯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것
- ③ 상기 개선 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제출할 것

### 3. 처분결과의 공표

피심인 산하 종합병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처분결과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.

	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정처분 결과 공표						
순번	위반행위를 한 자	위반행	위반행위의 내용		내용 및 결과		
[군긴	명칭	위반조항	위반내용	처분일자	처분내용		
1		제23조제2항, 제29조	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성 확보 조치 미이행		과태료 부과 420만 원, 개선권고		
2		상동	상동	2023.7.26.	상동		
3		상동	상동	2020111201	상동		
4		상동	상동		상동		
	2023년 0월 00일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						

# V. 결론

피심인 산하 종합병원의 보호법 제23조(민감정보의 처리 제한)제2항 및 제29조(안전조치의무) 위반에 대해서 같은 법 제61조(의견제시 및 개선권고) 제2항, 제75조(과태료)제2항제6호 및 제66조(결과의 공표)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

#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

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,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(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)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.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.

# 2023년 7월 26일

- 위원장 고학수 (서명)
- 부위원장 최 장 혁 (서 명)
- 위 원 강정화 (서명)
- 위 원 고성학 (서명)
- 위 원 백대용 (서명)
- 위 원 서종식 (서명)
- 위 원 이희정 (서명)
- 위 원 지성우 (서명)